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15

발의연월일: 2020. 10. 22.

발 의 자:고민정·김민철·김수흥

김승원 · 김영배 · 신영대

위성곤 • 이광재 • 이병훈

홍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셜벤처기업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환경, 교육, 삶의 질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자생적 경제 주체의 일원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정부에서도 소셜벤처를 통한 혁신적 포용성장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소셜벤처 육성·지원 사업을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소셜벤처의 다양한 순기능에도 현행 법령상 소셜벤처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 정책 수혜 시 많은 불리함을 겪고 있음. 소셜벤처 창업과 고용자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업계 전체의 매출은 정체되는 등 소셜벤처 생태계 성장에 장애가되고 있음.

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보증 및 투자를 비롯한정부의 각종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정부의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소셜벤처기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소셜벤처기업 인정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항 및 제16조의8 신설).

법률 제 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8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장제3절에 제1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8(소셜벤처기업) ①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요 건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중소벤처기업부령에 따른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수 있다.
 - 1.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 2.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 3. 그 밖에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소셜벤처기업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의3제 2항을 준용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⑨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⑨ (현행과 같
<u><신 설></u>	음) ①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u>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u> 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
	6조의8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
	업을 말한다 <u>.</u>
<u> <신 설></u>	제16조의8(소셜벤처기업) ① 소셜
	벤처기업은 사회성과 혁신성장
	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
	적인 요건은 중소벤처기업부령
	<u>에 따른다.</u>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
	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
	<u>을 할 수 있다.</u>
	1.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
	<u>증 및 투자</u>
	2.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자 또
	<u>는 창업자의 발굴·육성</u>
	3. 그 밖에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

고 소셜벤처기업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의3제2항을 준용하여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